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제2820호)

# 검 토 의 견 서

---

- 인권담당관 권명희 입니다.
  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이  
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0호,  
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
-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
현재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사항을  
개선하여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 
것입니다.

따라서,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.

다만, 인권단체 등에서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로 인한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11. 22.

인권담당관 권명희